

예 산 총 칙

2018년도 추경 3 회

제 1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25,468,730	18,764,062
일반회계	619,406,938	18,582,208
특별회계	6,061,792	181,854
기타특별회계	6,061,792	181,854
상·하수도사업특별회계	3,697,981	110,939
주택사업특별회계	13,000	390
의료보호기금사업특별회계	1,036,861	31,106
사회진흥소득사업특별회계	50,100	1,503
기초생활보장특별회계	1,135,850	34,076
천사성분재공원운영관리특별회계	128,000	3,840

제 2 조 2018년도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"세입·세출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2018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2,6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 명시이월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,2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.